

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기관	기관명			
	대표자명	생년월일		
	소재지	전화번호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의뢰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1부 2.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